

코로나19 감염병 대응 등교수업 출결관리 안내

군산지곡초등학교

I 기본 원칙

- (목적) 등교수업에 따른 코로나19 예방 및 안정적인 학사운영
- (적용 시기) 등교수업 개시 시점부터 별도의 안내가 있을 때 까지

II 등교 중지 학생

□ 특정 학생이 「학교보건법」 제8조, 「학교보건법시행령」 제22조 및 관련 지침에 따라 출석하지 못한 경우, '출석인정결석' 처리

※ 확진자 발생 등에 따른 시설이용 제한 조치로 일과 중 등교중지 되는 경우, 해당일은 '출석인정 조퇴' 처리

【 등교중지 대상 학생 】

대상	등교중지 기간	등교 재개 요건	출결증빙 자료
확진학생	보건당국에서 격리 해제할 때까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보건당국에서 판단 	입원치료 통지서 등(보건소 발부)
의사학생	14일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검사 결과 음성이더라도 확진환자 최종 접촉일로부터 14일 경과 시 	입원치료 통지서 등 또는 검사 결과지(보건소 발부)
조사대상 유증상학생	14일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검사결과 음성이더라도 등교중지된 날로부터 14일 경과 시 	격리통지서 또는 검사결과지(보건소 발부)
자가격리학생	14일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자가 격리 13일차에 실시한 검사결과 음성일 경우 	격리통지서 등(보건소 발부)
	가족(동거안)이 자가 격리 해제될 때까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가족(동거안)이 자가격리 해제된 경우 	가족(동거안)의 격리통지서, 학부모 의견서 등
유증상학생	증상발현* 후 3~4일 * 증상발현 즉시 선별 진료소 방문 및 진단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보건소, 선별진료소, 콜센터(☎지역번호+120 또는 ☎1339)의 조치에 따르되, 상태 호전 시 담임교사에게 연락 후 등교 	가정 내 건강관리 기록지, 학부모의견서, 진료확인서 등

【 대상자별 정의 】

- **확진학생**: 임상양상에 관계없이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에 따라 감염병 병원체 감염이 확인된 학생
- **의사학생**: 확진환자와 접촉한 후 14일 이내에 발열(37.5°C 이상) 또는 호흡기증상(기침, 호흡곤란 등)이 나타난 학생
- **조사대상 유증상학생**
 - ① 의사의 소견에 따라 원인미상폐렴 등 코로나19가 의심되는 학생
 - ② 해외 방문력이 있으며 귀국 후 14일 이내에 발열(37.5°C 이상) 또는 호흡기증상(기침, 호흡곤란 등)이 나타난 학생
 - ③ 코로나19 국내 집단발생과 역학적 연관성이 있으며, 14일 이내 발열(37.5°C 이상) 또는 호흡기증상(기침, 호흡곤란 등)이 나타난 학생
- **자가격리학생**
 - ① 해외 여행력*이 있거나 확진환자와 접촉하여 자가격리 통보를 받은 학생
 - * '20.4.1. 0시 이후 입국하는 국민 및 외국인은 보건소에서 14일간 격리조치
 - ② 가족(동거인) 중 해외여행이나 확진환자와의 접촉으로 자가격리된 사람이 있는 학생
- **유증상학생**: 37.5°C 이상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(기침, 호흡곤란 등), 구토, 설사 등의 소화기 증상, 메스꺼움, 미각·후각 마비 등이 나타난 학생

Ⅲ 고위험군 학생

의사의 진단서(소견서)를 통해 인정된 **기저질환**(폐질환, 만성심혈관질환, 당뇨, 신장질환, 만성간질환, 악성종양, 면역저하자 등) 및 장애를 가진 학생의 경우, '출석인정 결석**' 또는 '질병결석***' 처리

- * 기저질환 및 장애: 보건복지부 '장애복지카드' 소지자(의사 진단서 하에 발급)에 한함
- * 출석인정 결석: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"심각, 경계"단계이며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 결석한 경우
- * 질병결석: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"관심, 주의"단계이며, 학부모(보호자)가 학교에 사전 연락(전화 또는 문자 등)한 경우

※ 결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고위험군(기저질환 및 민감군)임을 확인하는 의사의 진단서(소견서)를 제출해야 하며, 학기 초 제출한 진단서(소견서)로 해당학기 증빙을 갈음할 수 있음

IV 기타 미등교 학생

□ 학부모 확인서 등 증빙서류를 근거로 ‘기타결석’ 처리

*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“심각, 경계” 단계이며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 결석한 경우

※ “심각, 경계” 단계에 한해 교외체험학습(가정학습) 신청 시 ‘출석인정 결석(연간 34일 이내)

※ 당해 학년도 수업일수의 3분의 2 이상 출석하지 않는 경우 진급·졸업 불가

【참고】

등교수업 출결 관련 Q & A

【Q1】 유증상 학생은 언제 다시 등교할 수 있나요?

- ☞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발현되면 즉시 ‘선별진료소’에 방문하여 진료(진단)를 받아야 하며,
 - 선별진료소 등의 진단 및 조치에 따르되, 상태가 호전되는 경우 담임교사에게 연락하여 등교할 수 있습니다.

【Q2】 기저질환자, 장애학생 등 감염우려가 높은 학생은 어떻게 출결 처리 하나요?

- ☞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‘심각, 경계’ 단계인 경우, 코로나19의 고위험군으로 분류된 질병*의 기저질환자 및 장애**를 가진 학생은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 ‘출석인정 결석’ 처리하게 됩니다.
 - * 폐질환, 만성심혈관질환, 당뇨, 신장질환, 만성간질환, 악성종양, 면역저하자 등 의료기관에서 고위험군으로 인정하는 경우
 - ** 보건복지부 ‘장애복지카드’ 소지자(의사 진단서 하에 발급)에 한함
- ☞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‘주의, 관심’ 단계에서는 보호자(학부모)가 사전 연락(전화, 문자 등) 하는 경우 ‘질병결석’ 처리하게 됩니다.
- ☞ 다만, 정해진 기간 내 해당 기저질환을 가진 고위험군으로 확인하는 의사의 진단서(의사 소견서)를 제출합니다.